

의료지도의사 운영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소방특별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병원 전 단계 구급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료지도의사 운영 ○ 응급환자 발생 현장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○ 접수 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		
사업비 (당해년도)	438,600천원	(국비)219,300천원	(시비)219,30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소방재난본부	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	정운교 726-2301	서은정 726-2050	박상현 726-2051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3예산액 (A)	2024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 0	(x219,300) 438,600	(x219,300) 438,600	(x100) 100
기타보상금	(x-) 0	(x219,300) 438,600	(x219,300) 438,600	(x100) 100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4년 예산내역
기타보상금	

과목구분	2024년 예산내역	
	○ 의료지도의사 운영 수당 438,600,000원*1식	= 438,600천원

3 사업 설명

- 사업목적
 - 의료지도의사 운영을 통한 병원 전 단계 구급서비스 전문성 강화
 - 접수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
 -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등
- 사업근거
 -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(구급지도의사의 선임) 및 제10조의2(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운영)
 -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의2(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)
 -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(응급의료의 제공)
- 사업내용
 - 사업기간 : 2024.01.~2024.12.
 - 지원대상 : 의료지도의사 운영을 통해 대시민 응급의료서비스 제공
 - 사업수행주체 : 서울종합방재센터
 - 추진방법 :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지도의사 24시간 운영
 - 사업의 주요내용 : 의료지도의사 운영을 통해 응급의료서비스 품질 향상
- 추진경위
 - 접수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을 통한 구급서비스 전문성 강화
 -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
 -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 시 현장 지원 등

2024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438,600	
의료지도의사 운영	2024.01~2024.12	438,600	의료지도의사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21년도	○ 기 간 : `21.01.01.~12.31 / 인 원 : 76명(인력풀) ○ 내 용 : 의료상담 및 의료지도 / 실 적 : 32,485건
2022년도	○ 기 간 : `22.01.01.~12.31 / 인 원 : 81명(인력풀) ○ 내 용 : 의료상담 및 의료지도 / 실 적 : 34,097건
2023년도	○ 기 간 : `23.01.01.~09.30. / 인 원 : 86명(인력풀) ○ 내 용 : 의료상담 및 의료지도 / 실 적 : 15,535건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전문 의료인을 통한 전문적 응급의료정보 제공 및 병원 전 단계 구급서비스 전문성 강화